

## ■ 건축물의 방화계획

### □ 건축물의 방화계획

- 방화계획의 역할(비상시 안전성확보, 방화상의 요청 충족)

① 배치계획(피난경로확보, 차량진입확보, 연소위험고려, 피난교설치 고려)

② 평면계획(피난행동 지원)

- Zoning 계획(계단의 배치, 단순명쾌한 피난로, 방배연계획)

- 안전구획(1차, 2차, 3차)

- 수직통로 계획(수직통로에 의한 상층 오염방지)

- 용도구획(타용도 부분과의 피난장해방지-인명안전 도모)

③ 단면계획

- 수평구획(각층 평면계획이 수직방향의 동선과 엇갈리지 않는 구조)

- 수직통로 구획(수직동선은 전용구획, 방연조치)

- 중간 절연층(초고층 건축물: 중간기계층을 중간 피난바닥으로 활용)

- 옥외피난바닥(옥상의 안전광장 확보)

- 발코니(취침시설인 경우)

④ 입면계획(커튼월 구조, 무창구조의 취약성)

⑤ 내장계획(내장재 불연화-출화억제, 발연량 감소, 플래시오버 지연)

⑥ 설비계획

- 공조설비(공조계의 방화, 방연 조치-열감지기 연동 댐퍼)

- 전기설비(방재설비 배선의 내화도, 비상조명장치)

- 급배수 설비(소화용수 확보 대책)

⑦ 연소확대 방지계획

- 방화구획(면적별, 층별, 용도별)

- 방화문(셔터설치의 제한)

- 방화댐퍼(설치위치의 선정, 보수관리의 철저)

⑧ 내화건축물 계획

- 내화설계방법(설계화재시간=기준화재시간 × 화재하중계수)

- 내화성능(층별 내화성능 기준)

- 내화피복(강구조 골조 등-화열로부터 일정시간 보호)

※ 건축물 방화대책상의 기본 요건

- 출화방지

- 건물내 연소확대 방지

- 피난안전 확보

- 주변공간 가해 방지(연소, 도괴)

- 소화활동의 원활화

- 시가지화재 방지